

청년기후긴급행동 내 반성폭력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요약

반성폭력기구는 청년기후긴급행동 내 회원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상담, 사건 접수, 사건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고, 청년기후긴급행동 내 반성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회원 대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상임위원회격의 상설 단위이며, 업무 계획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의결 주체인 청년기후긴급행동 이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청년기후긴급행동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에 따라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라 한다) 내 구성원을 그의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훼손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상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1조에 명시한 긴급행동 내 반성폭력 문화와 젠더정의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반성폭력기구'로 명명하며 그 별칭은 '마중'으로 정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된 범죄 행위를 말한다.
- ②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정관 제6조에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③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 ④ '사생활 침해'란 상대방의 소지품이나 개인 전자기기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⑤ '2차 피해'란 동 내규 제14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 ① 반성폭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2. 성폭력·성희롱 사건 접수, 조사 및 보고 조치

3. 성폭력·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안 및 이행 지원
4. 성폭력·성희롱 피해자(2차 피해자 포함) 보호와 회복 지원
5. 성폭력·성희롱 가해자 교육 지원
6.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7. 그 외에 반성폭력기구가 정하는 사항
8. 기타 긴급행동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요청한 사업

② 반성폭력기구는 본조제1항각호의 활동을 위해 긴급행동 내/외부 단체와 그 구성원과 협력할 수 있다.

③ 반성폭력기구는 동 내규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¹에 따른 업무 계획을 실시하기 전 이사회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정관 제5조에 따른 긴급행동 내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들과 긴급행동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긴급행동 외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회원에게 적용된다.²

② 이 내규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 적용된다.

제6조 (반성폭력기구 구성원)

① 반성폭력기구 구성원은 정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에 따른 긴급행동 내 정회원과 준회원 중 반성폭력기구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는 자 중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자로 한다.

② 반성폭력기구 구성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반성폭력기구 구성원은 본 내규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해 구성원 간 성실히 소통할 의무를 진다.

④ 반성폭력기구 구성원이 성폭력·성희롱 가해자로 지정된 사건이 발생할 시, 해당 사건 접수 즉시 해당 구성원의 반성폭력기구 소속 자격을 박탈한다.³

제7조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회원들의 동 내규 제3조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접수 및 피해 상담을 위하여 반성폭력기구 내에 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긴급행동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반성폭력기구 구성원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의 접수
2. 사건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및 상담 지원
3. 사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작성, 이행 및 점검
4. 그 외에 반성폭력기구가 정하는 사항

¹ 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성폭력 대책위원회, 긴급행동 회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업무계획.

² 즉, 긴급행동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해자, 그리고 긴급행동 외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긴급행동 피해자가 해당된다. 긴급행동 외부 사건의 피해자가 회원인 경우까지 동 내규가 적용되는 것은 긴급행동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³ 이 때 가해자로 지목된 구성원은 그 즉시 긴급행동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나,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동 내규 제14조의 내용과 이해관계상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④ 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해야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1 (성폭력 고충상담의 이용)

회원은 동 내규 제3조에서 규정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서면 혹은 별도의 온라인 서식 제출 등의 방법으로 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성폭력 대책위원회)

- ① 반성폭력기구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반성폭력기구 내에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 및 대책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반성폭력기구는 상담창구에 의한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책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완료한 뒤 신속하게 대책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대책위원은 반성폭력기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으로 한다.
- ④ 대책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의 조사 및 처리
 2. 사건 피해자(2차 피해자 포함) 보호 및 회복
 3. 사건 가해자 사과, 교육 및 모니터링
 4. 사건 기록 및 아카이빙
 5. 사건 처리 관련 긴급행동 이사회와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외에 반성폭력기구가 정하는 사항
- ⑤ 반성폭력기구는 긴급행동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대책위원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대책위는 긴급행동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반성폭력기구 내 교육)

- ① 반성폭력기구 구성원은 활동 시작 **1개월** 내에 성폭력·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반성폭력기구 구성원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예방교육)

반성폭력기구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연간 세부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 ① 대책위는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대책위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의1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대책위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순서에 따라 사건 접수, 조사, 피해자/가해자 소통,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 및 조사결과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① 반성폭력기구는 대책위 구성 즉시 사건 접수 및 구성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반성폭력기구는 대책위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 및 조치 제안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⁴

제13조 (조사 등 결과 통지)

반성폭력기구는 대책위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 혹은 온라인 매체 등으로 사건 조사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반성폭력기구는 대책위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의결하도록 이사회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반성폭력기구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의받지 않은 조사 방법의 결정 및 해당 방법으로의 조사
2. 동의받지 않은 조사 결과의 통보 및 긴급행동 내 보고 방법의 결정 및 해당 방법으로의 통보 및 보고
3. 동의받지 않은 조사 및 보고 과정에서의 실명 공개
4.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반성폭력기구 구성원 등 성폭력·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내규변경)

이 내규에 대한 변경안은 기구원 전원의 찬성을 거쳐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⁴ 이는 곧 반성폭력기구가 조사 권한은 있으나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할 권한은 없어, 조치사항에 대한 제안 의견을 최고심의기구인 이사회에게 송부하여 심의를 요청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2023. 10. 24. 제정

제2조 (개정)

2023. 12. 06. 1차 개정

제3조 (반성폭력기구 가입신청서)

내규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정의 지원서'는 다음의 Google Form 양식으로 갈음한다.

<https://forms.gle/EGLSugsAYQRmqnQg7>

제4조 (반성폭력기구 상담창구 상담신청서)

내규 제7조의1에 따른 '별도의 온라인 서식'은 다음의 Google Form 양식으로 갈음한다.

<https://forms.gle/UocnNEpY15YSmmUs7>

제5조 (성폭력 대책위원회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

내규 제11조의1에 따른 '별도의 문서'는 다음의 Google Docs 문서로 갈음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Qzmv8VtFkqkCYClz-AAIR24cMYT-rm6WBjxHJVPGHA/edit?usp=sharing>